

제조물책임 관련 판례와 사례 (IV)

글 · 강창경 연구위원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5. 동력연무기의 잦은 수리·교환으로 인한 피해 배상요구권

[사건개요]

2000. 5월초 청구인은 피청구인 영업사원에게서 농약 방제기기인 동력연무기를 사용하면 노동력 및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구입하였으나, 동 동력연무기가 사용 초기부터 시동 및 연무불량 등으로 7회 고장수리를 받았고, 3회나 제품을 교환받는 관계로 과수원 방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경운기를 이용하여 방제작업을 겨우 진행했음.

그러다 보니, 병해충 제거 작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사과가 썩고 사과결실의 크기가 작으며 벌레 먹은 사과가 생산되는 등으로 1,000상자의 수확감소를 입었다며, 이러한 피해는 과수원에 맞지 않은 동력연무기를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또한, 잦은 고장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수확감소분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임.

[당사자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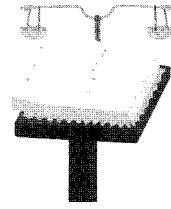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 5월초에 피청구인 방문판매사

원(○○○)으로부터 과수원 재배시 노동력 등을 절감하고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동력연무기를 구입(금액 125만원, 농협대출 93만원 포함)하여, 농약 40 l 를 살포하던 중 고장이 발생하여 출장수리를 받고 난 후, 다시 살포하다가 다시 고장이 발생하는 등 7회 이상 수리와 3회 제품교환을 받아 농약 방제시기에 동력연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사과나무의 진딧물이나 응애 등을 제때 방제하지 못해 썩은 사과가 나오고 정상과 같이 크지 않아 피해를 입었는 바, 피청구인은 이를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효과가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과수원의 방제효과는 농약선택, 배합비율, 살포량, 살포시기, 살포방법을 어떻게 결정했느냐 이지 단지 연무기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7회 A/S는 전문수리기사가 아닌 영업사원이 담당하여 미흡한 점이 있었고, 3회 연무기 교환은 영업적인 측면에서 실시한 것이지 수리불가능이 아니었음. 또한 청구인의 3년 평균 1,500상자가 수확되는데 2000년에는



500상자밖에 수확하지 못해 1,000상자의 감소로 1,500만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동력분무기로 사과 피해를 입었다는 뒷받침 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비록 1,000상자 분의 수확이 감소되었다 해도 상자당 2,500원이므로 피해액이 250만원에 불과한 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조정결정내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1.○.○일까지 금 3,000,000원을 보상한다.

[조정결정이유]

청구인의 동력연무기에 대한 피청구인의 A/S 실적 및 사유가 자료 제출 시마다 상이하여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사과형성기에 동력연무기를 빈번히 수리와 교환이 있어 농약 살포적기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확실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은 피해액에 대하여 일부 보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또한, 농약선정 및 살포시기 등에서 청구인의 재배상 과실을 찾을 수 없고 피청구인도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약 희석배수에 대해서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권유대로 고농도 희석을 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사과 농사 20년 경력이 있는 관점에서 본다면, 동력연무기는 농약 방제 수단에 불과한 “도구”라는 보조적인 농업용 기계이므로 고장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즉시 동력경운기 등으로 대체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수확감소를 막았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손해배상 책임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

하여야 할 것인 바, 농촌진흥청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하여 경북지역의 3년도 ('97~'99) 평균 소득에 따라 평균 소득금액(300평 기준 /2,749,241원)을 총 재배면적(2,618평)으로 환산한 뒤 농업기관에서 제시한 상품화율(92.6%), 수확체감율(25%), 소득감소액(60%)을 감안한 피해액(9,997,344원) 중에서 피청구인의 피해액의 30% 상당하는 3,000,000원을 보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조정결과] 불성립

6. 전기보온포트의 뜨거운 유출로 인한 화상 치료비 배상요구 건

[사건개요]

2000. 1월 전기보온포트를 거실에 세워 놓고 사용하던 중 7개월 된 아이가 만지다 넘어져 뚜껑의 빈틈으로 뜨거운 물이 새어나와 아이가 피하지 못하고 데어 3도 화상에 가까운 심한 화상을 입음. 피청구인은 사용설명서에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사항이 명백히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전기보온포트는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며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뜨거운 물이 새지 않도록 기밀성을 유지하여야 하나 뚜껑을 완전히 닫혔음에도 물이 새는 것을 제조상 결함이라고 주장함.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이사건의 제품이 가정 내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어린이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히 안전성을 갖추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였다고 보아 제품교환 및 치료비 배상을 권고함.

[처리결과] 20만원 상당의 고급제품으로 배상